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 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개정된 관계법령에 따라 서식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별지 서식의 주민번호 수집에 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도록 수정함
(안 별지 제1호, 제2호 및 제5호 서식)
-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안 제2조 외)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참조 보건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보건위생과(전화: 02-901-7624, FAX: 02-901-7609, E-mail: kjh6710@gangbuk.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우편번호 01145)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897 4층 보건위생과 (변동, 강북구보건소)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경우에는 강북구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gangbuk.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